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76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노종면 · 김 현 · 윤종근
최민희 · 서영석 · 김기표
김한규 · 김남근 · 김주영
허종식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을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상임위원”을 “상임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u>제44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u></p> <p><u><신 설></u></p> <p>③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u>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u></p>	<p>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 -----<u>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u></p> <p><u>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u></p> <p>⑥ -----<u>구성과 운영</u>----- ----- -----.</p> <p>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u>상임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의</u></p>

